

#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605호
----------	--------

제출년월일 2025. 4.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주차 감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기준(안 제3조)
- 다.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 사업의 신청, 지원결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마.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지원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 예정(비용추계서 별첨)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 9. ~ 2025. 1. 31.(22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나) 경 기 도 : 택시교통과

##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 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6. “무료 개방 주차장”이란 김포시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가 및 종교 시설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제공.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

여 하루 무료 개방 시간을 기준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3. 무료 개방 구역이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일 것.
4. 무료 개방 구역이 일반주차 구역과 구별되는 장소일 것. 다만, 일반주차 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 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무료 개방 주차장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무료 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무료 개방 주차장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결정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

차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료개방 주차장 범위, 기간, 개방시간
2. 지원 방법 및 주차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무료개방 주차장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4. 의무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
5. 관리주체 변경 시 승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 방치차량 통보를 받을 경우 「주차장법」 제15

조제2항, 제19조의3제3항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주체의 책임 등)** 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제12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3조(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 5.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교통정책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교통정책과장 서 승 수
	팀 장 직위·성명	주차시설팀장 이 강 제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서기 김 인 혁(☎2330)

[별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제4조 관련)

무료 개방 주차면수	지원금액
20면 ~ 30면	2,000만원 이하
31면 ~ 40면	2,500만원 이하
41면 ~ 50면	3,000만원 이하
51면 이상	3,500만원 이하

※ 보조금 지원금액은 무료 개방기간인 2년동안 최대 지원금액임.

###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차면수	
	주 소		무료개방 면수	
	전화번호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small>(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small>			
무료 개방기간				
무료 개방시간		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시설개선 신청 내용				
사 업 내 용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보조금	
<p>「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li> <li>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li> <li>3. (공동주택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li> </ol>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등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유재산 공사 진행을 위한 소유주 및 대리인 신원 일치 확인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소유주 및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공사 신청지 주소	동의일로부터 2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등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사 시행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주차시설 개선 공사의 진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유주 및 대리인의 성명, 공사 신청지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 취소된 경우 즉시 폐기)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등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 본인 확인
- 수집, 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귀하는 상기 1번~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 명	관 계	1. 수집·이용	2. 제 공	3.고유식별 정보처리	서 명
	본 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대 리 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24. 1.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024. 1. 9.>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3) 이용자의 범위
-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절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3) 주차장의 개방시간
-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절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삭제 <2017. 8. 16.>

라. 삭제 <2017. 8. 16.>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의4(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자에게 단지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주차장의 개방시간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대상자에게 주차시설개선비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5개소 이내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계획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지원대상 5개소 × 지원금액 20,000,000원 = 10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본예산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

- 예산법무과와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과장 서승수    팀장 이강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